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양양과 오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재향경우회의 사업과 시장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0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83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2일

발의의원 : 장인수 의원

찬성의원 :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와 양양과 오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재향경우회의 사업과 시장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와 양양과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오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